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652 발의연월일: 2024. 11. 18.

발 의 자: 박정현ㆍ이기헌ㆍ김남근

박홍배 • 박희승 • 황정아

서미화 · 허 영 · 송재봉

이용선 • 이용우 • 전현희

임호선 · 민병덕 · 서영석

이학영 · 위성곤 · 김영환

김성환 • 박균택 • 복기왕

김주영 · 김성회 · 정진욱

안호영 · 김민석 · 이재관

의원(27인)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관한 통칙에 관한 법률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고자 함에도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정의와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출자·출연 기관 정의와 적용 범위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개선하며,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통합등의 절차과정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의 주민참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있어서 지역성과 공공성을 구현할 수 있는 공공이사회를 구성·운영하고,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며, 임원추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이와 함께 경영진단에 따른 해산요청 등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출연 기관 중 문화·예술진흥 및 복지·장학증진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3항 각 호의 조치에 대한 예외에 포함 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선정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 (안 제6조).
- 나. 심의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대면 회의와 서면 회의 및 회의록 작성·공개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6조의2 신설).
- 다.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통합등의 절차과정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안 제7조).
- 라. 출자·출연 기관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하여 주민참여를 보 장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 마.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의 임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9조).

- 바. 출자・출연 기관에 이사회를 두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일정 정원 규모 이상의 출자・출연 기관에서 소속 노동자 중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이사(이하 "노동이사"라 한다)를 포함하 도록 하고, 노동이사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와 이사회 안건 제출권 보장 등 권한을 명확히 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투명 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도록 함(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 사. 출자·출연 기관 지배구조에서 핵심을 이루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정함(안 제9조의4 신설).
- 아.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또는 민영화 추진의 대상 기관으로 정하여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산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과 맞지 않아 해당 규정을 삭제하도록 함(안 제24조제2항제4호 삭제).
-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영진단의 결과 기관의 해산 청구나 민영화의 추진과 같은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지방의회에 미리 보고하고 의결을 얻도록 하며, 출연기관 중 문화·예술진흥 및 복지·장학증진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기관에 대하여는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3항 각 호의 조치에 대한예외에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30조).

법률 제 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9조"를 "제9조부터 제9조의4까지"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의료"를 "의료, 자선"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설립·운영"을 "설립·운영 또는 통합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자·출연 기관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을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임명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구성과 운영"을 "구성"으로한다.

- 1.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2명 이내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단체 대표의 추천을 받은 사람 3명이내
-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내

- 5.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내
- 6. 그 밖에 법조계·경제계·여성계·학계·언론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조의2(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들이 출석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 과반수의 사전 동의를 거친 사안(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이나 해산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④ 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의 제목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전 협의 등)"을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 또는 통합등의 타당

성 검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출자·출연 기관(제2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중액하여 출연하려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설립·운영"을 "설립·운영 또는 통합등"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출자·출연 기관(제3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
- 3.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통합·폐지·분할, 제30조제 3항제3호에 따른 기관의 해산 청구나 민영화 추진(이하 "통합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 또는 통합등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마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그 검토 결과를 7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의견 제시 방법 및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게재하여야한다.

-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설립 · 운영을 하려는 경우
 - 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나.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다. 그 밖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 제1항제3호에 따라 통합등을 하려는 경우
 - 가. 통합등의 내역과 사유
 - 나. 통합등으로 인한 출자·출연 기관의 조직 및 인력수요 등의 변동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 다. 그 밖에 출자·출연 기관의 통합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기관의 설립 또는 통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으로, "시·도지사는"을 "제2항 후단에 따른 지역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중 "설립 승인"을 "설립 또는 통합등 승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중 "설립하려는"을 "설립하거나 통합등을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설립하려는"을 "설립하거나 통합등을 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하려는"으로, "설립 타당성"을 "설립 또는 통합등의 타당성"으로 하며, 같

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설립·운영"을 "설립·운영 또는 통합등"으로 한다.

제2장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주민 등의 참여) ① 출자·출연 기관은 예산 편성, 운영성과 보고 등 기관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하여 주민참여를 보장하 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참여 방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은 제9조의4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 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 ⑦ 제2항에 따른 임원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조의2(이사회) ①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기관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9조의3(노동이사) ① 정원이 50명 이상인 출자·출연 기관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 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이사(이하 "노동이사"라 한다)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정원이 100명 이상인 출자·출연 기관은 노동이사를 2 명 이상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노동이사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 제9조의4(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제9조에 따른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및 지역주민단체 및 노동계를 포함한 관련 직능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 2.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 3. 출자・출연 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 4. 출자·출연 기관의 노동이사 중 1명(정원이 50명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호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0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항(종전의 제4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그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3. 문화·예술·복지·장학을 목적으로 하는 출연기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 또는 통합등의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립·운영 또는 통합등을 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심의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 제4조(기관장 및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기관장 및 임원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 대상 등) ①・② (생	제2조(적용 대상 등) ①・② (현
략)	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	3
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	
해서는 <u>제9조</u> , 제10조의3, 제11	제9조부터 제9조의4까지-
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	
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8조제3항ㆍ제4항, 제19조	
및 제2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	
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
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	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	
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	

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u>의료</u>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있는 사업
- 2. (생략)
- ②·③ (생 략)
- 제6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 지위원회) ①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제1항에 따른 출자・ 출연 기관의 <u>설립・운영</u>의 타당성 등
 - 2. ~ 7. (생략)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출자·출연 기관 운 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

1
<u>의료, 자선</u>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에6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
위원회) ①
1
<u>설립·운영 또는 통</u>
합 <u>등</u>
2. ~ 7.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 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 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u><신</u>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임명하 거나 위촉한다.

- 1.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 람(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 하는 공무원 2명 이내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주민단체 대표의 추천을 받 은 사람 3명 이내
-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 조제5호에 따른 시민사회단 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내
- 5.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 합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내
- 6. 그 밖에 법조계 · 경제계 · 여성계 • 학계 • 언론계 및 노 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출 자・출연 기관의 운영과 관 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

- ③ ④ (생 략)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u>구성과 운영</u>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	장이
추천	하는 ᄼ	사람 2	.명	이내	

- ③·④ (현행과 같음)
- ⑤ -----------<u>구성</u>-----
- 제6조의2(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들이 출석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 과반수의 사전 동의를 거친 사안(출자・출연기관의 설립이나 해산 여부등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④ 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 성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제7조(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제2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 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 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 하여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업의 적정성

법률 1 제9조제1항에 따른 비 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 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운영 또는 통합등의 타당성 검 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설립ㆍ운영 또는 통합등-----삭제>

1.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 1. 출자・출연 기관(제3항제2호 에 따라 협의를 하지 아니할 2.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3. 그 밖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신 설>

수 있는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

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

연하려는 경우

3.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
된 기관이 통합・폐지・분할,
제30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기관의 해산 청구나 민영화 추진(이하 "통합등"이라 한다)

을 하려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운영 또는 통합등의 타당성등에 대한 검토를마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구분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그검토 결과를 7일 이내에 대통령이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의견 제시 방법 및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게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③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제4조제3항에 따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시·도지사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 라 설립・운영을 하려는 경 우 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나.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다. 그 밖에 지역경제에 미 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 2. 제1항제3호에 따라 통합등 을 하려는 경우 가. 통합등의 내역과 사유 나. 통합등으로 인한 출자・ 출연 기관의 조직 및 인 력수요 등의 변동이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다. 그 밖에 출자・출연 기 관의 통합등이 지역경제 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기관의 설립 또는 통합등을 하 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 -----<u>제2항</u>후단에 따 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 · 트 지역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 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하 지 아니할 수 있다.

- 1. 다른 법률(「민법」 및 「공 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외한다)에 출자· 출연 기관의 설립 승인과 협 의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 2. 그 밖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 ③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제1항 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 립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반영하여 시・도지사는
1
설립 또는 통합
<u> 등 승인</u>
2
설립하거나 통합등을 하려
<u> </u>
<u> </u>
<u>설립하거나 통합등을 하</u>
<u> </u>
설립 또는 통합등의 타당성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u>설립·운영 또는</u>

타당성 등 검토 및 공개와 설 통합등-----립 전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임원) ① (생 략)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지 | 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 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 로 임명한다.

<신 설>

제7조의2(주민 등의 참여) ① 출 자・출연 기관은 예산 편성.

운영성과 보고 등 기관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하여 주 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계획 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참 여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9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 | 은 제9조의4에 따른 임원추천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 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 만,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 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 ③ ~ ⑤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 <u>④</u> ~ <u>⑥</u> (현행 제3항부터 제5 항까지와 같음)
- ⑦ 제2항에 따른 임원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의2(이사회) ①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을 의결하기 위하여 기관에 이 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의3(노동이사) ① 정원이 5 0명 이상인 출자・출연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소속 근로자(「근로기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중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이 사(이하 "노동이사"라 한다)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원이 100명 <신 설>

- 이상인 출자·출연 기관은 노 동이사를 2명 이상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노동이사는 해당 출자・출
 연 기관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
 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 제9조의4(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과 운영) ① 제9조에 따른 임 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에 임원추천위 원회를 둔다.
 -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추천하는 사람 2명,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및 지역주민단체 및 노동계를 포함한관련 직능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 하는 사람 1명
 - 2.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2명
 - 3. 출자·출연 기관의 이사회

- 요청 등) ① (생 략)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 관에 대해서는 해산을 요청하 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 3. (생 략)
 - 4. 제30조제1항에 따라 경영진 단을 실시하여 같은 조 제3 항제3호에 따라 해산을 청구 하거나 민영화 추진의 대상 기관으로 정하여진 경우
 - ③ (생략)
- · ② (생 략)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가	추천하는	사람	3명

- 4. 출자・출연 기관의 노동이 사 중 1명(정원이 50명 이상 인 경우에 한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임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제24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요청 등) ① (현행과 같음)

(2)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 ③ (현행과 같음)
- 제30조(경영진단의 실시 등) ① 제30조(경영진단의 실시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 (3) -----

에 따른 경영진단의 결과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 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하 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 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출자·출연 기관 의 장은 그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단서 신 설>

1. ~ 4. (생 략) <신 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 쳐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생 략) <신 설>

<u>3</u>. (생 략)